생활체육교실 출강 약정서

서울특별시 "중구청장"과 "생활체육교실 ()출강강사"는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. 이하 "생활체육교실 ()출강강사"를 "출강 강사"라 한다.

- **제1조** 본 약정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교육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 강좌 출강에 적용한다.
- **제2조 (강좌명)** "출강강사"는 "중구청장"이 개설하는 생활체육교실의 ()프로그램 강의를 담당한다.
- 제3조 (강사료) 강사료는 월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, 시간당(24,000원 /35,000원) 강사료에 출강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며 익월5일까지 지급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**제4조 (강좌운영)** 생활체육교실 강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사항을 정한다.
- 1. "중구청장"은 생활체육교실 이용 수강생의 감소로 계속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해당강좌를 폐강할 경우 또는 강좌시간, 요일 등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"출강강사"는 "중구청장"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.
- 단, 강좌 폐강할 경우에는 1개월전,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발생즉 시 "중구청장"은 "출강강사"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2. 또한, "출강강사"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강할 수 없을 때는 1개월전에 "중구청장"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3. "출강강사"는 "중구청장"이 실시하는 강좌가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 용 차원의 공익적 사업임을 인식하여 성실하게 출강하고 최선을 다해 지도하여야 한다.

- 4. "출강강사"는 수강생에게 교육용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"중구청장"의 양해없이 부대비용을 요구하지 못한다.
- 5. "출강강사"는 강의 중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강좌 운영 중에 본인과실에 의해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"출강강사"는 "중구청장"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6. "출강강사"는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매월 "중구청장"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 (자료제출) "출강강사"는 신상과 강좌계획 등 강좌의 진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"중구청장"이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 (약정기간)

- 1.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2016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.
- 2. 각종 선거나 다른 피치 못할 사유로 중간에 휴강할 경우 "중구청장"은 "출강강사"에게 사전 1개월전 또는 사유발생 즉시 통보하고 약정 기간을 조정한다.
- 3. 약정기간 종료 후에는 "중구청장"과 "출강강사"의 쌍방간 합의하에 재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.
- 4. 1호와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"출강강사"가 강사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"중구청장"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"중구청장"은 "출강강사"와의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7조 (분쟁의 조정) 본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에 따라 쌍방이 협의한다.

2016년 월 일

"중구청장"

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120-1

성명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(인)

"생활체육교실 ()출강강사"

주소:

성명: (인)